

서울특별시 서울재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4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2월 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재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(위원회) 운영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'업사이클링'을 '재활용'으로 순화(안 제2조~제4조, 제6조, 제10조)
- 나. 위원회 비상설화 및 부위원장직 삭제(안 제16조)
- 다.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조항 정비(안 제17조~제18조)
- 라. 그 밖의 자구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
※ 의견내용: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은 이해충돌방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항이므로 유지

※ 반영사항: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유지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사항 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 10. 31. ~ 11. 20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박우현 (☎ 2133-3696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업사이클링”을 “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(용답동)에 위치해있으며, 새활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업사이클링”이란”을 ““새활용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업사이클링”을 각각 “새활용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업사이클링”을 각각 “새활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시설(이하 “소재은행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업사이클링”을 “새활용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“서울새활용플라자”를 “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”로, “시설은”을 “시설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요율은 「공유재산

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제1항”을 “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, “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”를 “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업사이클링”을 “재활용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”을 “위촉직과 당연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, 안건이 심의·의결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.
- ⑦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20조를 제18조로 한다.

제18조(중전의 제20조)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서울새활용플라자”란 <u>업사이클링</u>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“<u>업사이클링</u>”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.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제3조(기능)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업사이클링</u>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</p> <p>2. <u>업사이클링</u>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</p> <p>3. <u>업사이클링</u>, 재사용 등 재활용 문화 확산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</p> <p>1. ----- <u>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(용답동)에 위치해있으며, 새활용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 “<u>새활용</u>”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새활용</u>----- -----</p> <p>2. <u>새활용</u>----- -----</p> <p>3. <u>새활용</u>----- -----</p>

4. 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에 대한 교육, 전시, 체험 공간 제공

5. (생략)

제4조(설치) 서울새활용플라자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국내·외 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, 기업, 단체, 기관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

2. 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·작품을 생산·연구하는 공간

3. 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·작품의 생산·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·가공·판매하는 시설(이하 “소재은행”이라 한다)

4. 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·작품을 전시·판매하는 공간

5. (생략)

제6조(사용료) ①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

4. 새활용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설치) -----

-----.

1. ----- 새활용-----

--

2. 새활용-----

3. 새활용-----

----- 시설

4. 새활용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사용료)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 -----
----- 시설의 -----

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② 사용료의 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③ 제2항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, 기업, 단체, 기관

2. 그 밖에 재활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입주자 등 지원) ① 시장은 서울재활용플라자에 입주한 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, 기업, 단체,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

-----.

② ----- 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

-----.

<삭 제>

④ -----
----- 사항은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-
-----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-
-----.

제10조(입주자 등 지원) ① -----

재활용-----

있고,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6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·④ (생략)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⑥ (생략)

<신설>

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구성) ① ----- 위촉직과 당연직-----

-----.

② 위원장-----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, 안전이 심의·의결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8조(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

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

<삭 제>

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9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
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

<삭 제>

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
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
경우

4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
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
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
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
경우

5.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
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
경우

6. 1년 단위(위촉일부터 기산(起
算)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
다)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
만인 경우

7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

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
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.

1.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
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

2.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
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

은 경우

3. 천재지변, 응급상황, 그 밖에
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
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
경우

제20조(운영) ① 협의회 회의는
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
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
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
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
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
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
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
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
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~ ⑥ (생략)

제18조(운영) <삭 제>

<삭 제>

① ~ ④ (현행 제3항부터 제6
항까지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서울재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, 위원회의 구성 등을 수정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

4. 작성자

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박우현 (☎ 2133-7511)